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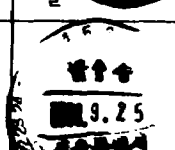



#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공 28282-923	(전화: 750-8354)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운영구. 10.5(3).1.	시 장 1034		
수신처 보존기간	3102	1034		
시행일자	91. 9. 26	1034		
보조 기 관	부시장	협조 관	법무담당관 심사관	
	산업경제담당			
	상공과장			
기안책임자	김재현	발		
경유 수신 참조	국안참조	발신 명 의	시 장	
제 목	'91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용자 지원			
(제 1 안) 내부결재				
1. 상공 28282-194 (91. 3.7)오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와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실적 및 운용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여기 91년도 시비출연금과 구조성된 자금외회수 및 발생이자로 37개업체에 대하여 용자 지원연박 있습니다.				
3. 여우 회수금 및 여가 4억1천만원을 그동안 장마시 피해금정이 있음서 지원금으로 확보하였으나, 여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회수에상금등을 감안, 추가용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오니 재결을 바랍니다.				
첨부 1. 91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용자 지원계획서 1부.				

1991. 9. 26  
 김재현

2. 공고 (안) 1부. 끝.	
(계 2 안)	
수신 : 수신계장조	
제목 : '91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용자계획 서달	
1. 우택시 소재 중소기업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용자 <del>추진</del> 하여	
별첨과 같이 용자지원 계획을 서달하여 용자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91. 10.30 까지 추천할것이며,	
2. 용자대상 추천시 재현서류의 구벽여부 및 적격여부의 연장조서 복명서	
작성철저, 상공부고시에 의한 무등록 공장 등록시 여건조건부 등록공장이나 허용자를 받아	
상환중단 업체등을 추천하는 사항이 없도록 엄선하고, 공개 양명구현에따라 구보계획,	
대상업체 통보등 용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1) 91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용자지원 계획서 1부.	11/14
2) 구보 계획 공고 (안) 1부. 끝.	
수신처 : 서구 1- 22 (산업과장).	
(계 3 안) 1/10	
수신 : 공보관	발신 : 산업경제과장

<p>제목 : 시보 기재 요청</p>
<p>1. 우편서 '91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용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자</p>
<p>별첨과 같이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첨부 : 공고 (안) 1부. 끝.</p>
<p>( 제 4 안 )</p>
<p>수신 : 수신처참조</p>
<p>제목 ' '91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용자 지원 계획 통보</p>
<p>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용자 지원계획을 통보하여 산하</p>
<p>각조합에도 통보하여 많은 업체가 신청할수 있도록 용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첨부 : 계획서 1부. 끝.</p>
<p>수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서지국장, 서울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임의희장.</p>
<p style="text-align: right;">1991. 9. 24 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인)</p>

'9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융자 계획

1. 목 적

우려사 소재 중소기업체에 자금 (용도 - 시설 및 운전, 기술 개발)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2. 지원근거

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0. 여조례 시행규칙

3. 금회 추가 융자지원 가능액

0. 금회 조성 총액 : 4,079억단원 (91. 6. 30현재)

0. 대출중액 금액 : 3,669 "

0. 91. 9. 15현재 추가융자 지원 확보액 : 410억단원

[ 상환보증 어저액 : 121억단원

[ 8월말현재 회수액 : 289 "

0. 91. 9. 16 - 92년도 융자시 (3-4월경)까지 회수및 이차발생예상액: 216억단원

\* 야적업체도 선정후 지원

0. 금회 융자추천 가능 견제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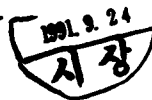
. 12개업체, 600억단원 (압채당 50억단원)

4. 용도 및 융자조건 금액

0. 용도 : 시설, 운전, 기술 개발 자금

0. 융자조건 : 년리8%,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0. 금액 : 압채당 50억단원 이내



1991. 9. 24

5. 용자 지원 절차

0. 지원시달 (시→구) → 용자대상 희망업체추천 (구→시) → 대상상사  
(기금운용위원회 - 위원장 : 산업경제국장) →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  
지원가능여 범위내 업체수결정) → 용자업체 선정통보 (시 → 중소기업은행)  
→ 용자수속후 자금수령 (신청업체 → 중소기업은행)

6. 용자신청 및 추천 (중소기업체, 국구청)

가. 신청기간 (업체) : 91.10.1 - 10.25

나. 용자대상 (포박시행규칙 제3조 해당자)

- 1) 관할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한자
- 2) 존공업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자 (다만, 저소득시민에게 부담을 제공  
하고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또는 동원일자 생산업체는  
그리하지 않음)
- 3) 공예예술시설 설치가 대상자는 당해어가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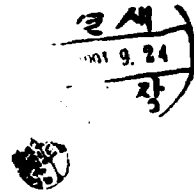
다. 용자신청 및 추천 (포박시행규칙 제3조)

1) 구버서류 (업체)

0.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추천 신청서 (소정양식)
0.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0.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0. 공예예술시설 허가증 (여가대상 업체에 한함)
0.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0. 생산실적 또는 수출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0. 영등조합 가입 확인서 (기업업체에 한함)

2) 신청서 고부 및 접수

0. 업체(공장) 소재지 관할구청 산업과



## 7. 용자대상 선정

### 0. 금회선정 총 업체수: 12개업체 내의

- 용자지원 가능액 (410억단원) 예정업체 : 8개업체
- 신청업체가 많을경우 91. 9- 92.3월까지 기간도별 대출의수금및 증식  
이자 예상총액 216억단원 (의수금 : 74억단원, 증식이자: 142억단원)  
으로 용자지원 할 수 있도록 예비업체도 4개업체 선정

### 0. 대상선정 (포커 제6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경제국장)  
에서 심의후 선정함

## 8. 행정사항

- 0. 관내 중소기업체에 널리 홍보 공개 행정 구현
  - 구보개제 (별첨 공고안), 보도자료 제출
- 0. 구청장은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확인하고, 복명서 작성에 따른 시행규칙  
제3조 해당여부 기록철저
- 0. 신청업체의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등)을 판단하여 금융기관  
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한 미대출 사례 방지
- 0. 중소기업은행 각지점중 신청업체가 거래하는 지점, 거래지점이 없을 경우  
업체에 가까운 지점을 선정 복명서에 기록 추천
- 0. 용자별은 업체에 사후관리 철저

시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6 호

32: 1716-230  
한 | 공 | 고

'9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체의 시설 및 안전,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지원  
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1. 9. 25.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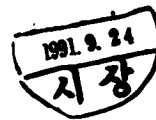
1.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등

가. 융자대상

- 1) 관할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한자
- 2) 준공업지역에서 제조업 영위자 (다만, 적소독식면에게 부임을 제공하거나  
소독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또는 동원물자 생산업체도 지정  
받은자는 그러하지 않음)
- 3) 공약이행시설 설치여가 대상자는 이가를 받은자

나. 융자조건등

- 1) 자금이용도 : 시설, 안전, 기술개발자금
- 2) 융자한도액 : 업체당 50,000,000원 이내
- 3) 금리 : 년리 8%
- 4) 상환기간 : 3년 (1년거치, 2년균등 분할 상환)



2. 융자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91. 10. 1 - 10. 25

나. 장소 : 양계 권할구청 산업과

다. 용자신청서 구비서류

- 1)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추천 신청서 (소정양식)
- 2)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 3)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공업개발시설 허가증 사본 (허가대상 업체에 한함)
- 5) 건축물권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 6) 생산실적 또는 수출관포를 증명하는 서류
- 7) 업동조합가입 확인서 (기업업체에 한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상공과 (전화 750-8351-6) 또는 양계 권할구청 산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